

의안번호	2208736
의 퇴 인	권성동의원
회 답 일	2025.3.13.
추계번호	25D1362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감사관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만 총 50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안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안 제7조(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안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안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안 제20조(보수 등)	인건비	688
	운영비	3,941
	시설비	413
	합계	5,042

주: 본 추계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 인원(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파견공무원)과 기간(감사준비, 특별감사, 연장감사)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향후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특별감사관은 2명의 특별감사관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감사관보를 임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감사관보는 5명 이내의 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사관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함(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특별감사관은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감사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 결과를 조치함(제2항)	의무규정
		특별감사관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특별감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감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0조(보수 등)	특별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급의 예에, 특별감사관보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특별감사관의 퇴직 시까지 특별감사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0	—
2	안 제7조(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0	—
3	안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0	—
4	안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0	—
5	안 제20조(보수 등)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및 감사관(이하 “특별감사관등”이라 함)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나누고, 준비기간, 특별감사, 연장감사로 구분하여 추계함
- 인건비는 제정안의 문언¹⁾과 특별감사관등이 수행할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 특별감사관: 감사원의 차관급 공무원 인건비 적용
 - 특별감사관보: 감사원의 고위공무원단 인건비 적용
 - 감사관: 기존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수사관(3급상당 별정직)²⁾ 인건비 참고

1) 안 제20조(보수 등) ① 특별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급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감사관보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준한다.

③ 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본 추계에서는 특별감사관 제도가 운영된 전례가 없고 감사활동과 수사 활동이 유사하다고 보고, 운영비와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³⁾에 따른 특별검사(이하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라 함) 등의 수사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제정안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정직 인원	임명직	특별감사관: 1명 특별감사관보: 2명 감사관: 최대 5명	특별검사: 1명 특별감사관보: 최대 4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파견공무원	파견공무원: 최대 50명	파견검사: 최대 10명 파견공무원: 최대 30명
	소계	최대 58명	최대 85명
감사(수사)기간		최대 270일	최대 120일
재판(공소유지)기간		-	최대 12개월

- 본 추계에서는 특별감사 기간 동안 감사관 5명이 임명되고,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으며, 감사기간은 최대 기간인 270일(9개월)⁴⁾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르면 감사관은 5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고 파견공무원은 50명 이내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인원인 감사관 5명과 파견공무원 50명을 각각 임명하고 파견받는다고 가정
 - 파견공무원 50명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
 - 다만, 고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 기타 직을 수사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채용하여 운용⁶⁾한 사례가 있으나, 현시점에서 특별감사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될 기타직의 인원과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감사관 또는 파견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2) 제정안에서 감사관의 보수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公安직인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함

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4) 감사준비 30일(1개월), 특별감사 6개월, 연장감사 60일(2개월) 등 최대 270일(9개월)임

5)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6)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40명이나,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5명이었고, 기타직 19명을 채용한 바 있음(자료: 법무부)

- 제정안에 따라 특별감사관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단가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비집행내역⁷⁾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⁸⁾과 소비자물가상승률⁹⁾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운영비와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수사기간(4개월, 2022.5.16.~ 2022.9.12.)에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시설비는 감사인력이 감사기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사무실 리모델링 등 최초 공사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으로 함
 - 제정안에 따라 감사준비(30일, 4월), 특별감사(6개월, 5월~10월), 연장감사(60일, 11월·12월)를 하는 것으로 가정

7)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2년 및 2023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 (2022.5.16. ~ 2022.9.12.)	공소유지기간(일부) (2022.9.13. ~ 2023.12.31.)
직무활동 운영비 ¹⁾	1,727	525
시설비 ²⁾	407	172

주: 1.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총 62명(특별감사관 1명, 특별감사관보 3명, 감사관 5명, 기타직 19명, 파견 인력 34명)임

2.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등

자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국 (2024.6.13.)

8)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024. 1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7%	2.5%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1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5%	2.1%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제정안의 문언과 특별감사관 등이 수행할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특별감사관과 특별감사관보의 인건비는 2025년도 감사원의 차관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인건비를 적용

[표 3] 특별감사관·특별감사관보의 월 평균 보수: 2025년

구분	월 평균 보수
특별감사관(차관급)	13,291,905원
특별감사관보(고위공무원단)	12,807,663원

주: 월 평균 보수는 월봉(연봉/12개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을 합산함
 자료: 감사원 2025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사관의 인건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3급)의 인건비에 국회예산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4] 감사관의 월 평균 보수 추정: 2025년

구분	월 평균 보수(2023년)	월 평균 보수(2025년) ^{주)}
감사관(3급)	7,139,000원	7,456,507원

주: 2023년 월 평균 보수(7,139,000원)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5%, 1.9%)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국의 자료(2024.6.1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라 감사준비, 특별감사 및 연장감사 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감사관등의 인건비 총액은 6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특별감사관등의 인건비 추정: 2025년

(단위: 명, 개월, 백만원)

구분	인원·월 보수		감사준비		특별감사		연장감사		합계 (I=D+F+H)
	인원 (A)	월 보수 (B)	기간 (C)	소계 (D=A×B×C)	기간 (E)	소계 (F=A×B×G)	기간 (G)	소계 (H=A×B×G)	
특별감사관	1	13.3	1	13	6	80	2	27	120
특별감사관보	2	12.8	1	26	6	154	2	51	230
감사관(3급)	5	7.5	1	38	6	225	2	75	338
합계	8	—	—	76	—	458	—	153	68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감사원 2025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국의 자료(2024.6.1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운영비

- 운영비는 감사활동과 수사활동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운영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함
 -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수사기간(4개월) 직무활동 운영비의 1인당 단가는 2022년 기준 6.96백만원¹⁰⁾
 -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운영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감사인력의 인원 수¹¹⁾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
- 제정안에 따라 감사준비, 특별감사 및 연장감사 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감사의 운영비 총액은 39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특별감사의 운영비 추정: 2025년

(단위: 명, 개월, 백만원)

구분	인원·운영비 단가		감사준비		특별감사		연장감사		합계 (I=D+F+H)
	인원 (A)	월 운영비 단가(B)	기간 (C)	소계 (D=A×B×C)	기간 (E)	소계 (F=A×B×E)	기간 (G)	소계 (H=A×B×G)	
운영비	58	7.6	1	438	6	2,627	2	876	3,941
합계	—	—	—	438	—	2,627	—	876	3,94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국의 자료(2024.6.1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시설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함
 -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수사기간(4개월)에 집행한 시설비의 1인당 단가는 2022년 기준 6.56백만원¹²⁾
 -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운영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감사인력의 인원 수¹³⁾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

10)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17억 2,700만원)를 개월 수(4개월)와 활동인원(62명)으로 나누어 산출함

11) 총 58명(특별감사관 1명, 특별감사관보 2명, 감사관 5명, 파견공무원 50명)

12) 수사기간의 시설비(4억 700만원)를 활동인원(62명)으로 나누어 산출함

13) 총 58명(특별감사관 1명, 특별감사관보 2명, 감사관 5명, 파견공무원 50명)

- 시설비는 감사인력이 감사기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사무실 리모델링 등 최초 공사비만 반영
- 제정안에 따른 특별감사에 필요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 시설비 총액은 4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특별감사의 시설비 추정: 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인당 재정소요 (A)	인원 (B)	재정소요 (C=A×B)
시설비	7.1	58	413
합계	—	—	41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국의 자료(2024.6.1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감사관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만 총 50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안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안 제7조(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안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안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안 제20조(보수 등)	인건비	688
	운영비	3,941
	시설비	413
	합계	5,042

주: 본 추계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 인원(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파견공무원)과 기간(감사준비, 특별감사, 연장감사)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향후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감사관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 감사인력과 감사기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